

130㎡當 1臺의 附設駐車場을 設置토록 함으로써 事業地域內의 住民들의 駐車難을 解消코자 한 것입니다.

條例改正案을 審査한 結果, 道路幅의 最小限度를 2m 이상 確保토록 한 것은 地域內 住民의 通行과 物件 等の 運搬을 위하여 道路幅員의 最小 기준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附設駐車場의 確保는 必로 低所得 住民의 住居地域이라고 하더라도 駐車難이 加중되고 있는 서울市 實情을 적정히 반영한 것이라고 認定되었습니다.

建築物의 높이제한은 關聯 法規에 따라 條例에 인용한 條文을 整備한 것 등으로, 이번에 改正하고자 하는 條例內容들이 서울市의 실정에 맞고, 關聯 法과도 內容이 일치하다고 認定되어 우리 委員會에서는 改正條例案을 原案대로 改正하기로 審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이번에 改正하고자 하는 條例의 內容은 住居環境改善事業地域 內의 住民의 共通된 意見을 받아들이고 일부 條文을 關聯 法律과 일치시켜 줌으로써 住居環境改善事業을 活性化시키고자 한 것임을 理解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委員會에서 審査한 대로 條例가 改正될 수 있도록 議員 여러분들께서 積極 議決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事項은 배부해 드린 審査報告書를 參考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白昌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都市整備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서울特別市住居環境改善事業施行條例中改正條例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건축물에 대하여 도로폭 2m 이상일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도로폭 2m 미만일 경우에는 2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1조중 “등법시행령 제86조제1호의”를 “제53조의”로 한다.

제25조중 “건축물에”를 “연면적 300㎡미만 건축물에”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선지정 및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구지정된 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7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호가목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2층이하의 다세대주택은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4배이하

12. 서울特別市交通誘發負擔金輕減等에關한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6時)

○議長 白昌鉉 다음은 議事日程 第12項 서울特別市交通誘發負擔金輕減等에關한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交通委員會 尹寬炳議員님 나오셔서 審査結果를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寬炳議員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 議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交通委員會 所屬 尹寬炳議員입니다.

本議員이 審査報告드리고자 하는 條例案은 서울特別市交通誘發負擔金輕減等에關한條例案입니